2019년도
본청 (4차)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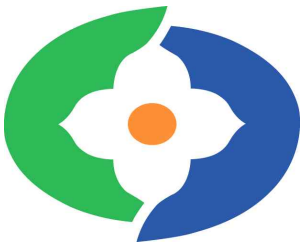

영 동 군

(기 획 감 사 관)

- 2019년도 본청(4차)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19. 10. 17. ~ 10. 23.(5일간) /2016. 9월부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각종 수당 등 예산 집행 실태
  - 각종 소관업무 현장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8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8건 (주의 5건, 시정 3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4,125,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영동 실현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및 석면슬레이트 주민수요 대폭 반영,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추진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 착공으로 자원순환시스템 개선
  - 어서실 비점오염저감시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로 영동천 청청화 추진
  -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선정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8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환경과	총8건 [환경관리팀5, 공통1(자원순환, 하수도), 하수도팀1,공통1]	주의 5 시정 3		회수 4건 4,125,000원
1	환경 관리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3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주의		
4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 소홀	주의		
5		◦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주의		
6	자원순환팀, 하수도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건 2,009,000원
7	하수도팀	◦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1,245,000원
8	공통	◦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871,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집행내역

(단위: 원)

제공내역				지출내역							비고
물품명	제공일자	수량	수령자	지급일자	지급명령번호	예산과목 세부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적 요	채권자	지급액	
○○○	2018. **.**.	○○	○○○○ ○○○○ ○	2018. **.**	***	맑고깨끗한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홍보용 특산품 구입	-	35,000	

【위법부당사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거 예산편성하고,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

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은 영동군 소속 ○○○○가 아니므로 ○○○○○○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경과에서는 2018. **. **.일 격려 차원의 홍보용 특산품 ○○○ 1박스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불가 사항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통계목	적요	지급일자	지급액	거래처명	적정 예산과목
○○○○○ ○○○	사무관리비	2018년 ○○○○○○○○ ○○○및 ○○○ 구입	2018-**-**	6,410	-	기타보상금
○○○○○ ○○○	사무관리비	2018년 ○○○○○○○ ○○○○○ ○○ 구입	2018-**-**	464	-	
○○○○○ ○○○	사무관리비	2018년 ○○○○○○○ ○○○ 및 ○○○ 구입	2018-**-**	198	-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	사무관리비	○○○○용 ○○○ 구입	2018-**-**	86	-	자산취득비
○○○○	사무관리비	○○○○용 ○○○ 구입	2018-**-**	43	-	자산취득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편성목 일반운영비(201)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성목	통계목	기본경비의 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301-09)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및 숙박비로 급식비 기준단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기타보상금(301-11)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환경과에서는 2018년 ○○○○ ○○○○○을 추천받아 4개 권역 29명의 ○○○○○○ ○○○○○○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 성격이 아닌 민간인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행사실비 보상금(301-09)으로 적정 편성하였으나, ○○○ 및 ○○○는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기타보상금(301-11)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

도 사무관리비(201-01)로 부적정하게 편성 집행한 사실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인 ○○○○○○○○에게 지급되는 ○○○ 및 ○○○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로 부적정하게 편성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18. 6. 5.일 및 7. 11.일 구입한 사무실 '○○○'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지방재정	59	59	100%	52	88.1%	49	83.1%	0	
새올행정	117	0	0%	0	0%	0	0%	117	

【위법부당사항】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환경과에서는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을 기한이 지나 처리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새올행정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추출된 117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을 적기에 처리·승인을 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 소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영동군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위 현황처럼 ○○○ 외 14명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보상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 심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 외 2건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1명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최대 8개월이 지나 정산보고를 실시하였으며, 50명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3 ~ 7개월이 지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최대 12개월이 지나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009,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 부적정 현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계						**2,009,000**
○○○ ○○리 ○○○○ 설치사업(전기)	17.**.**.	17.**.**. 17.**.**.	-	37,149,910	36,095,910	**1,054,000**
영동군 ○○○○○○ ○○○○ 보수공사	18.**.**.	18.**.**. 18.**.**.	-	258,444,120	257,489,120	**955,000**

【위법부당사항】

○ 건설 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계상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별표 2]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2017. **. **. ㈜○○○○ ○○○와 계약하여 2017. **. **. 준공한 「○○○ ○○리 ○○○○ 설치사업(전기)」 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산 없이 준공금을 지출하여 **1,054,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8. **. **. ㈜○○○○ ○○○과 계약하여 2018.**. **.준공한 「영동군 ○○○○○○ ○○○○ 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으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에 **도장복 50벌**을 구입하여 지출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이는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인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955,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건 총2,00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24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현 황】

○ 원가계산서 작성 적정 현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영동○○○○○○○ 개선공사	17.**.**.	17.**.**. 17.**.**.	-	27,800,000	26,555,000	**1,245,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각종 사업의 설계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예정가격 산정은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또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7. **. **. ○○○○(주) ○○○와 계약하여 2017. **. **.준공한 「영동○○○○○○○ 개선공사」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 변경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수식오류로 인한 변경 도급액이 잘못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산을 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하여 1,245,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부적정하게 계산 지급된 준공금 1,245,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871.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자 급량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 훈련 참가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군에서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의 초과근무 정산 내역을 근거로 실근무자에 한하여 급량비를 산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실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과 소속 직원의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의 초과근무 정산 내역을 근거로 특근매식비 집행대장과 급량비 집행 내역을 대조한 결과 초과근무 정산 내역의 급식인원과 특근매식비 집행대장의

급량비 집행 내역이 다르게 집행된 사실이 있음.

❍ 2018. **. **. ○○○ 외 90명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총 52회 651,577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 **. ○○○ 외 31명에 대하여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총 31회 219,886원을 지급하는 등 총80회 123명에 대하여 871,000원(*천원 미만 절사)의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환경과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량비 871,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라며,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집행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초과근무 정산내역을 근거로 실근무자에 대하여 급량비를 산출 집행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